

의안번호	2203864
의 퇴 인	임호선의원
회 답 일	2024. 10. 15.
추계번호	24B3711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제2항 (선박의 계선 신고 등)	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상태 및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(제2항) ※ 계선 신고 접수시 관리청이 선박의 상태와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하고 계선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장비등 점검 및 확인 비용이 소요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제2항(선박의 계선 신고 등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선박의 계선 신고 등(안 제7조제2항)

□ 계선(繫船)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하며,¹⁾ 계선 절차는 다음과 같음

○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²⁾

1) 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0. “계선(繫船)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.

2) 법 제7조(선박의 계선 신고 등)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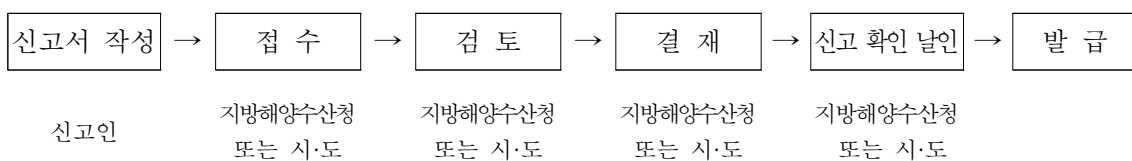
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는 자는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선박을 계선하여야 한다.

④ 관리청은 계선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

-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하는 경우는 관리청에 신고
 - 관리청이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 수리
 -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해당 선박 계선
- ※ 관리청이 계선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안전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킬 것을 명할 수 있음
- ※ [참고자료] 선박 계선 개요 참고

[그림 1] 선박 계선절차

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

□ 개정안에 따라 계선 신고 접수시 관리청이 선박의 상태와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하고 계선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, 점검 및 확인에 따른 비용이 소요됨

○ (관리청) 해양수산부장관(국가관리무역항) 또는 시·도지사(지방관리무역항)³⁾

※ 계선 장소의 관리주체에 따라 국비 또는 지방비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계선 대상 선박 수, 계선장소의 관리주체(국가 또는 지방), 선박유형별 상태 확인 비용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서는 해당 자료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.

인에게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.

3) 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2. (생략)

2의2. “관리청”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.

가. 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: 해양수산부장관

나. 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배아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

[참고자료] 선박 계선 개요

(해양수산부 제출자료)

□ 선박 계선

- (계선절차)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
 -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하는 경우는 관리청에 신고
 - 관리청이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 수리
 -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해당 선박 계선
- ※ 관리청이 계선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안전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킬 것을 명할 수 있음

<참고: '계류' 및 '계선(繫船)' 개념>

「선박입출항법」

- 계류: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,
- 계선: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

「선박안전법령」

- 계선: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(이하 '계선')한 경우 그 선박*

* 계선기간: 2년 이내. 이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(통상 연단위 기간으로 신청)

⇒ '장기계류선박'은 '계선' 또는 '방치'된 운항중단 선박을 의미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

- (계선료)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·요율 및 산정기준
 - 「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」 제7조 및 제8조 관련

1. 무역항의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

사용료의 종류	징수대상시설	요 율	비 고
가. 선박료			
(4) 계선료	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	(가)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(10톤·12시간당) ① 외항선: 28.5원 ② 내항선: 9.2원	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

1-2. 국가관리연안항의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

사용료의 종류	징수대상시설	요 율	비 고
가. 선박료			
(4) 계선료	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한 계선장	(가)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 (10톤·12시간당) ① 외항선: 13.1원 ② 내항선: 4.2원	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 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

2.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

사용료의 종류	사용료 산정기준
(2) 접안료, 정박료 및 계선료	(자) 계선료는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계선신고를 하 고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15일 이상 계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 (차) 국가비귀속 계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료를 징수한다. 이 경 우 시설소유자의 계류시설 부족으로 인해 정박지에 대기하는 경우에는 정박료 를 면제하지 않는다.

□ 최근 5년간 선박 계선 신고 현황

(관리청이 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함)

(단위: 건)

관리청		2020	2021	2022	2023	2024. 9월
지방해양 수산청	부산	16	11	11	17	24
	인천	61	25	18	39	25
	여수	—	10	2	2	—
	마산	32	28	39	34	21
	울산	21	33	14	12	14
	동해	0	2	3	0	1
	군산	10	15	13	15	10
	목포	1	5	0	0	2
	포항	0	2	1	4	0
	평택	4	8	18	2	1
	대산	0	0	0	0	0
	소계	145	139	119	125	98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